

## 수원시 청렴메아리

〈2021. 11월 1차〉

사람중심 더 큰 수원 더 공정하고 더 청렴한 수원시 만들기  
여러분의 참여와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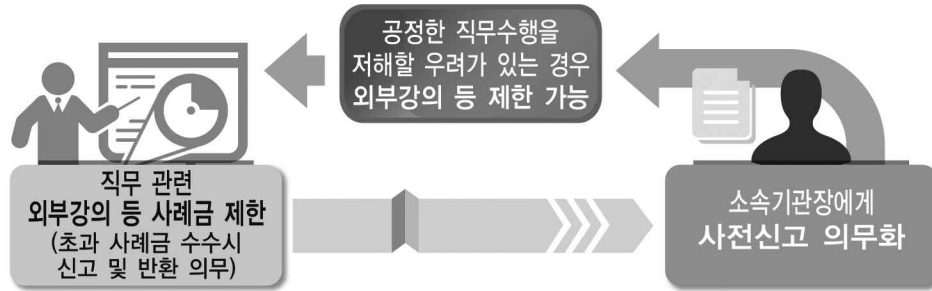
## 2021 수원시 신년화두 : 安民濟生 (편안 안, 백성 민, 도울 제, 살 생)

안전한 시민, 활기찬 경제

□ 청렴사회로 가는길 □ 매일 실천 청렴



###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및 사례금 준수



- 신고대상 :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·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·홍보·토론회·세미나·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하는 강의·강연·기고 등
- 신고 및 방법 : 사전신고 (행정포털→틈새업무→외부강의/회의 신고)
- 횟수 제한 : 월 3회 또는 월 6시간 초과 금지
- 사례금 상한 기준 : 40만원
  - \*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
  - \* 상한액에는 강의료, 원고료,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

#### 【외부강의 신고 관련 Q&A】

<b>A사무관이 외부강의 1시간을 한 후에 해당기관 제공자로부터 50만원을 수령하고, 초과사례금 신고 및 반환조치를 안했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 지?</b>
■ 위반임. 공무원의 경우 1시간 기준 외부강의 사례금은 최대 40만원까지 수령가능함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.
<b>기타실력이 출중한 B주무관이 본인이 주거하는 사청 주관으로 연말 음악회에 개인적으로 기타공연을 했을 경우 외부강의에 포함되는 지?</b>
■ 외부강의에 미포함. 외부강의는 교육,홍보,토론회,세미나 등과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,지식을 전달하는 회의형태여야 함.

**청렴** 청렴시책 : 수원시 청렴팀(031-228-2842), 부패청탁금지법 위반신고(국번없이 1398)

**청렴** 공직비리 :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(031-228-3073)

※ 부조리 신고를 제외한 일반 민원은 『열린시장실/시장님보세요』이용